

학교법인 삼육학원

2021년도 2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1년 2월 24일 오후 3:30 ~ 오후 4:30(회의소 집통보일 : 2021년 2월 16일)

2. 장 소 : 한국연합회 2층 회의실(원격영상회의)

3. 출결사항

구 분	정 수	재 적	참 석	참 석 임 원	결석임원	비 고
이 사	15명	15명	14명	김삼배 강순기 김은자 김일목 남시창 박두한 박정택 박종규 신원식 오세원 장원관 정근태 최승호 허창수	전광진	
감 사	2명	2명	2명	최호성 은기호		

4. 안 건 :

- | | |
|-----------------------------|---------------------------|
| (1) 임원 사임 및 선임안 | (2) 교직원 인사안 |
| (3) 2021년 중등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안 | (4)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 |
| (5)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6) 휘경데이케어센터 2020년 결산안 |
| (7) 2021학년도 보수규정안 | (8) 법인정관 개정안 |
| (9) 삼육보건대학교 잠손실 처리안 | (10) 삼육대학교 실외체육시설 설치안 |
| (11) 삼육대학교 학칙개정안 | (12) 중장기 법인 진출금 재정운용계획안 |
| (13) 교육환경개선 사업안 | (14) 삼육보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안 |
| (15) 간서명 임원 선임안 | |

5. 회의내용 : 이사장 강순기 목사님 의장석에 등단하고 성원보고에 이어 인사 말씀이 있었고 (인사말씀 생략) 부의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다.(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1) 임원 사임 및 선임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에 부언하면 개인사로 인하여 법인의 이사이신 오세원 교육이사와 개방감사이신 최호성 감사께서 2021년 2월 25일부로 사임 의사를 표하셨습니다.(오세원 이사 및 최호성 감사 퇴장) 학교법인 임원 재임기간 동안 법인의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세원 교육 이사와 최호성 감사의 2021년 2월 25일부 사임안 의결을 제안합니다.

박정택이사 : 동의합니다.

김삼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13명, 반대:0명)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오세원 교육 이사와 최호성 감사의 사임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사임 결의에 따라 후임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감사 이신 최호성 감사께서 사전에 사임 의사를 표하셨기에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본 법인 정관 제24조의 4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1명(이승희)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일로부터 5년간이며 감사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후임 이사와 감사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박 종 규	박 정 택	박 두 한
-----	-------	-------	-------

허창수이사 : 서해삼육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신 조영욱 교장을 교육이사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이승희 한국연합회 부재무님을 개방감사로 추천하며 이에 제안하고 동의합니다.

남시창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13명, 반대:0명)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조영욱 교육이사와 이승희 개방감사의 임명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세원이사 및 최호성감사 입장)

(2) 교직원 인사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1학년도를 위한 교직원 인사안으로 별지 1과 같습니다. 간사의 설명과 같이 해당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으로 제안된 별지 1의 교직원 인사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이사 : 동의합니다.

김일목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교직원 인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중등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중등교장 자격인정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등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가. 김성중

임용예정학교 : 대전삼육중학교

임용시기 : 2021. 3. 1로 임용

추천사유 : 풍부한 교육경력 및 학식과 덕망을 소유

나. 김학택

임용예정학교 : 한국삼육고등학교

임용시기 : 2021. 3. 1로 임용

추천사유 : 풍부한 교육경력 및 학식과 덕망을 소유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최승호이사 : 동의합니다.

박두한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2021년 중등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 제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삼육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삼육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 위원 : 박정택, 신원식, 최승호

간서명	박 정 주	박 정 택	박 두 한
-----	-------	-------	-------

교직원위원 : 김남정, 김원곤, 오복자

외부 위원 : 오범석

정근태이사 : 동의합니다.

신원식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삼육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학부모부담수입감소 및 교육비특별회계증감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별지 2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허창수이사 : 동의합니다.

장원관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2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휘경데이케어센터 2020년 결산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2020년 휘경데이케어센터의 결산안입니다. 별지 3의 2020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박종규이사 : 동의합니다.

허창수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3의 2020년 휘경데이케어센터 결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학년도 보수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2021학년도 삼육대학교 및 삼육보건대학교의 보수규정안입니다. 별지 4를 참고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시창이사 : 동의합니다.

박정택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4의 2021학년도 보수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법인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법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별지 5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간서명	박종규	박정택	남시창
-----	-----	-----	-----

김일목이사 : 동의합니다.

최승호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5의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육보건대학교 잡손실 처리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삼육보건대학교의 요청에 의한 잡손실 처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금액	기간	비고
국제언어교육원	3,576,000원	2018년 ~ 2019년	유학생 불법체류로 인한 미수
피부건강관리과	3,693,200원	2016년 3월 ~ 2017년 2월	회수 불가능 장기 미수
	7,269,200원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박두한이사 : 동의합니다.

신원식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삼육보건대학교의 요청에 의한 잡손실 처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육대학교 실외체육시설 설치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삼육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실외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안입니다.

구 분	세부내역
사 업 명	· 공릉동 26-18번지 내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설치
사업내용	· 행위허가 면적: 4,159㎡ · 건축면적: 99㎡(연면적 198㎡) ·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기납부 · 현재지목: 답 · 행위허가 후 변경지목: 체육용지 외 부대시설(대지) · 사업기간: 2020.11.~2021.05. · 공사내역(총 공사비 225,000,000원) - 설계감리 및 토목공사(30,000,000원) - 부대시설 및 바닥공사(195,000,000원/전기공사 포함)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김은자이사 : 동의합니다.

오세원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간서명	박종규	박정택	박두한
-----	-----	-----	-----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삼육대학교의 실외체육시설 설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육대학교 학칙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삼육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별지 6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오세원이사 : 동의합니다.

김삼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6의 삼육대학교 학칙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장기 법인 진출금 재정운용계획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중장기 법인 진출금 재정운용계획 안입니다. 별지 7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장원관이사 : 동의합니다.

정근태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7의 중장기 법인 진출금 재정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교육환경개선 사업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대전삼육초등학교의 요청에 의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명 : 대전삼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사업규모 : 356㎡

사업내역 : 교실3실(돌봄교실, 합창실, 피아노실), 화장실1실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2년 10월(24개월)

예 산 : ₩843,000,000

자 원 : 학교비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허창수이사 : 동의합니다.

박종규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대전삼육초등학교의 요청에 의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육보건대학교 2025 ACE 36+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안

간서명	박종규	박재택	박두환
-----	-----	-----	-----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삼육보건대학교 2025 ACE 36+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안입니다. 별지 8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남시창이사 : 동의합니다.

박정택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8의 삼육보건대학교 2025 ACE 36+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간서명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이제 간서명 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목이사 : 박정택, 박종규, 박두한이사를 추천하며 동의합니다.

최승호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간서명 임원으로 박정택, 박종규, 박두한이사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02월 24일

간서명	박종규	박정택	박두한
-----	-----	-----	-----

◆참석이사:

이사장 강 순 기

이 사 강 위 련

이 사 오 세 원

이 사 김 삼 배

이 사 강 서 광

이 사 김 은 자

이 사 최 승 호

이 사 이 리 성

감 사 최 로 성

이 사 김 영 복

이 사 허 창 우

이 사 박 종 규

이 사 박 재 태

이 사 박 두 환

이 사 정 근 매

이 사

감 사

간서명	박 종 규	박 재 태	박 두 환
-----	-------	-------	-------

별지1. 교직원 인사안

1. 삼육대학교 인사

가. 신규채용(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사광균	건축학과 조교수-강의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오재현	경영학과 조교수-산학협력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엄지영	경영학과 조교수-산학협력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서지현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조교수-산학협력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김미정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산학협력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이택준	동물생명자원학과 조교수-연구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박종환	상담심리학과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윤병인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김숙영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김진협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백근철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소성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심재일	상담심리학과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오성규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이주환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Annamaria Miller	영어영문학부 조교수-외국인전공강의교수	2021.03.01.~2023.02.28.
Ndimukika Moses Maka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외국인전공강의교수	2021.03.01.~2023.02.28.
Nicole A. Walker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외국인회화강의교수	2021.03.01.~2023.02.28.

나. 퇴직

박종환	상담심리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송태민	보건관리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권재범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김성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정대성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심경섭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정주홍	건축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1.03.01.

다. 재임용(전임교원)

김혜린	약학과	조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2021.03.01.~2023.02.28.
이장미	아트앤디자인학과	조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2021.03.01.~2023.02.28.
윤미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2021.03.01.~2023.02.28.
이금선	상담심리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강의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황혜미	경영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강하식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곽정무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김기환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정상민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간서명	백종규	정재택	백우환
-----	-----	-----	-----

한동철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현대연	스미스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심교수)	2021.03.01.~2023.02.28.
Mi Young Lee	물리치료학과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교수)	2021.03.01.~2023.02.28.
Lagundino William Chester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교수)	2021.03.01.~2023.02.28.
Ian Robert J.Aujero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교수)	2021.03.01.~2023.02.28.
Hannah Shin	영어영문학과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교수)	2021.03.01.~2023.02.28.
Danielle Marie Etter	영어영문학과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교수)	2021.03.01.~2023.02.28.

라. 승진임용

한금윤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2021.03.01.~2025.02.28.
신선화	간호학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2021.03.01.~2025.02.28.

마. 복직

임명성	경영학과	부교수	2020.09.16.
-----	------	-----	-------------

2. 삼육보건대학교 인사

가. 신규채용(비정년트랙)

주덕배	전인교육원	조교수(교육전담교수)	2021.03.01.~2023.02.28.
-----	-------	-------------	-------------------------

3. 중등교원 인사

가. 복직

박문희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사	2021.03.01.
이예리	대전삼육중학교	교사	2021.03.01.

나. 휴직

강서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질병휴직	2021.03.01.~2022.02.28.
양태일	동해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1.03.01.~2021.12.26.
양태일	동해삼육고등학교	교사	간병휴직	2021.12.27.~2022.02.28.
김현정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1.03.01.~2022.02.28.
임아름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사	난임휴직연장	2021.03.01.~2022.02.28.
임지혜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	2021.03.01.~2022.02.28.
기한나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1.06.01.~2022.02.28.
김효진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	2021.05.01.~2022.02.28.
임창수	한국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1.03.01.~2022.02.28.
김은희	한국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연장	2021.03.01.~2022.02.28.

다. 휴직취소

백인영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취소(결의20200124-(2))	2021.03.01.~2022.02.28.
-----	----------	----	------------------------	-------------------------

라. 퇴직

오세원	대전삼육중학교	교장	정년퇴직	2021.02.28.
-----	---------	----	------	-------------

간서명	백종규	박재택	백두환
-----	-----	-----	-----

정풍희	서해삼육고등학교	교사	명예퇴직	2021.02.28.
이연수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의원면직	2021.03.01.

마. 진출입

정기호(사회)	원주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주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김성일(정보)	원주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주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이인숙(국어)	원주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주삼육중학교로	2021.03.01.
김영자(사회)	원주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주삼육중학교로	2021.03.01.
이성덕(사회)	원주삼육고등학교에서 원주삼육중학교로	2021.03.01.
김예원(영어)	신규 영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이경구(일반사회))	영남삼육중학교에서 영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신여정(체육)	영남삼육중학교에서 영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하헌철(체육))	영남삼육고등학교에서 영남삼육중학교로	2021.03.01.
남성우(사회))	영남삼육고등학교에서 영남삼육중학교로	2021.03.01.
문연우(수학)	동해삼육중학교에서 동해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임효식(체육)	동해삼육고등학교에서 동해삼육중학교로	2021.03.01.
이광주(음악)	서해삼육고등학교에서 서해삼육중학교로	2021.03.01.
신유리(역사)	서해삼육중학교에서 서해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이준희(체육)	서해삼육중학교에서 서해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서정임(국어)	서해삼육중고등학교에서 서해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최은희(수학)	호남삼육중고등학교에서 호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박은아(정보)	호남삼육중고등학교에서 호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권형준(수학)	호남삼육고등학교에서 호남삼육중학교로	2021.03.01.
김상준(수학)	호남삼육중학교에서 호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강서희(국어)	호남삼육중학교에서 호남삼육고등학교로	2021.03.01.

바. 파견연수

이계명(종교)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교로	2021.03.01.~2021.08.31.
---------	---------------------	-------------------------

4. 초등교원 인사

가. 휴직

신소영	원주삼육초등학교	교사	질병휴직연장	2021.03.01.~2022.02.28.
최고은	원주삼육초등학교	교사	육아휴직연장	2021.03.01.~2022.02.28.

나. 퇴직

이선희	대전삼육초등학교	교장	정년퇴직	2021.02.28.
김은자	원주삼육초등학교	교장	의원면직	2021.03.01.
곽성안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사	의원면직	2021.03.01.
이서연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사	의원면직	2021.03.01.

다. 승진

간서명	백종규	백지택	백두환
-----	-----	-----	-----

이미선

원주삼육초등학교 교감에서 원주삼육초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2021.03.01.

5.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인사

가. 퇴직

김송현	정교사(의원면직)	2021.02.28.
이슬잎	정교사(의원면직)	2021.02.28.
최수민	정교사(방과후과정-의원면직)	2021.02.28.
이수현	정교사(방과후과정-의원면직)	2021.02.28.
김영현	정교사(인턴-의원면직)	2021.02.28.
노혜경	정교사(인턴-의원면직)	2021.02.28.
원 월	부교사(의원면직)	2021.02.28.
장보우	부교사(의원면직)	2021.02.19.
정미란	부교사(의원면직)	2021.02.28.

나. 신규임용

노혜경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이수현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김영현	정교사(방과후과정)	2021.03.01. ~ 2022.02.28.
배영인	정교사(인턴)	2021.03.01. ~ 2022.02.28.
이 진	정교사(인턴)	2021.03.01. ~ 2022.02.28.
조예진	정교사(인턴)	2021.03.01. ~ 2022.02.28.

다. 재임용

이미화	원감	2021.03.01. ~ 2022.02.28.
이미정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김윤성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백아름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최은진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홍기은	정교사	2021.03.01. ~ 2022.02.28.
권신덕	부교사	2021.03.01. ~ 2022.02.28.
남자현	부교사	2021.03.01. ~ 2022.02.28.
김현재	부교사	2021.03.01. ~ 2022.02.28.
정미란	부교사	2021.03.01. ~ 2022.02.28.
홍민지	행정직원	2021.03.01. ~ 2022.02.28.
최건환	관리기사	2021.03.01. ~ 2022.02.28.
김애실	조리사	2021.03.01. ~ 2022.02.28.
권순희	조리사	2021.03.01. ~ 2022.02.28.

6. 직원 인사

가. 신규채용

임종식(일반직4급) 삼육보건대학교 재무실 실장

2021.03.01.

간서명	백종규	백종현	백수환
-----	-----	-----	-----

전영준(일반직4급)	삼육대학교	내부감사	2021.03.01.
김남정(일반직6급)	삼육대학교	재무실	계장
			2021.03.01.

나. 정규직원 전환

조성현(연봉제정규직)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03.01.
-------------	---------	-------	-------------

다. 직원 휴직

홍승찬	삼육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	간병휴직	2021.04.01.~2022.03.31.
-----	-------	-----	-------	------	-------------------------

라. 퇴직

김경철	삼육보건대학교	재무실장(의원면직)	2021.03.01.
주 언	삼육대학교	재무실(의원면직)	2021.03.01.

간서명	백종규	박근태	박수환
-----	-----	-----	-----

별지2.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초1. 광주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6,176,415		6,621,592		-445,177		-6.7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 책사업	금회	누계	구 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106	643,645	10.4	인적자원 운용	35,247	1,681,035	27.2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2,785	7,215	0.1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0,820	863,946	13.9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15,589	3,944,273	63.8	기본적 교육활동	-47,410	619,065	10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7,909	24,431	0.3	선택적 교육활동	-102,110	1,120,144	18.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556,851	25.2	교육활동 지원	-120,064	337,146	5.4
					학교 일반운영	-93,563	405,876	6.5
					학교시설 확충	-76,457	1,144,203	18.5
					학교 재무활동	0	5,000	0

초2. 대구삼육초등학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1,915,194		1,961,033		-45,839		-2.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5,691	0.2	인적자원 운용	-8,027	569,381	29.7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560	214,842	11.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4,084	332,871	17.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226	24,774	1.2	기본적 교육활동	-11,329	210,883	1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7,151	1,578,719	82.4	선택적 교육활동	-31,327	380,349	19.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4,022	35,681	1.8	교육활동 지원	-1,160	107,862	5.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55,487	2.8	학교 일반운영	100	145,269	7.5
					학교시설 확충	20,988	168,406	8.7
					학교 재무활동	-1,000	473	0

간서명	백종주	백지택	백두환
-----	-----	-----	-----

초3. 동해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1,831,181		1,878,052		-46,871		-2.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750	0.2	교육활동 지원	1,875	106,537	5.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943	215,259	11.8	기본적 교육활동	-14,751	356,117	19.4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60	331,246	18.1	선택적 교육활동	-36,370	108,998	6.0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42,000	2.3	인적자원 운용	9,205	937,088	51.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8,174	1,223,248	66.8	학교 일반운영	-875	61,102	3.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16,678	0.9	학교 재무활동	0	1,153	0.1
					학교시설 확충	0	5,940	0.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955	254,246	13.9

초4. 부산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5회	2,491,373		2,454,266		37,107		1.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16,800	0.6	인적자원 운용	1,315	785,342	31.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563	481,336	19.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63	586,954	23.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000	293,000	11.7	기본적 교육활동	-8,990	487,955	19.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4,670	1,661,736	66.6	선택적 교육활동	35,570	212,047	8.5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17,349	0.6	교육활동 지원	1,300	176,101	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1,152	0.8	학교 일반운영	3,275	188,721	7.5
					학교시설 확충	5,000	42,000	1.6
					학교 재무활동	0	12,253	0.4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	-----	-----	-----

초5. 서울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6,379,615		6,327,803		51,812		0.8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84,850	1.3	인적자원 운용	-20,148	2,120,234	33.2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20,482	749,017	11.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0,845	1,253,216	19.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8,182	0.1	기본적 교육활동	-79,354	990,549	15.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0,446	5,047,129	79.1	선택적 교육활동	-13,922	844,712	13.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0,884	76,884	1.2	교육활동 지원	38,311	190,551	2.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413,553	6.4	학교 일반운영	-102,680	260,242	4
					학교시설 확충	270,450	700,111	10.9
					학교 재무활동	0	20,000	0.3

초6. 서해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2,450,269		2,445,332		4,937		0.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9,423	1,306,587	53.3	인적자원 운용	-11,294	874,382	35.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2,750	434,350	17.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02	335,906	13.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736	676,892	27.6	기본적 교육활동	-161	410,072	16.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22,882	0.9	선택적 교육활동	568	189,255	7.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9,558	0.3	교육활동 지원	10,388	64,147	2.6
					학교 일반운영	5,638	98,077	4
					학교시설 확충	0	478,324	19.5
					학교 재무활동	0	106	0

간서명	백종주	백래	백우한
-----	-----	----	-----

초7. 태강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6,701,532		6,630,266		71,266		1.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114,800	1.7	인적자원 운용	-893	2,340,621	34.9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72,028	904,551	13.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8,827	1,340,710	20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2,212	0.1	기본적 교육활동	-2,799	1,357,359	20.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922	5,189,028	77.4	선택적 교육활동	-3,821	493,605	7.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60	268,781	4	교육활동 지원	25,819	410,492	6.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12,160	3.1	학교 일반운영	9,485	344,569	5.1
					학교시설 확충	-5,352	414,176	6.1

초8. 원주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4,187,144		4,172,639		14,475		0.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8,306	590,144	14	인적자원운용	-4,164	1,744,157	41.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80,682	11,340	0.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5,809	508,562	12.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470	3,264,944	77.9	기본적 교육활동	180,598	930,892	22.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4,381	76,800	1.8	선택적 교육활동	-57,963	371,190	8.8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43,916	5.8	교육활동 지원	-40,239	90,194	2.1
					학교 일반운영	-68,923	150,147	3.5
					학교시설 확충	40,975	381,475	9.1
					학교 재무활동	0	10,497	0.2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초9. 춘천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2,786,925		2,912,926		-126,001		-4.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2,500	0	인적자원운용	-22,274	1,038,757	37.2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792	793,895	28.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6	581,114	20.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7,422	22,797	0.8	기본적 교육활동	-70,536	367,165	13.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86,371	1,853,323	66.5	선택적 교육활동	-26,579	217,379	7.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1,000	29,952	1	교육활동 지원	37,583	140,522	5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84,458	3	학교 일반운영	-6,066	120,240	4.3
					학교시설 확충	-38,113	307,210	11
					학교 재무활동	0	14,538	0.5

중1. 동해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6회	1,300,403		1,292,806		7,597		0.6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26,445	2	인적자원 운용	-4,761	721,437	55.4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7,597	1,196,972	9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141	150,316	11.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7,692	0.5	기본적 교육활동	-6,654	110,426	8.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37,021	2.8	선택적 교육활동	-426	73,590	5.6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1,969	0.1	교육활동 지원	25,451	161,163	12.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0,304	2.3	학교 일반운영	-10,154	68,959	5.3
					학교시설 확충	0	1,600	0.1
					학교 재무활동	0	12,912	0.9

간서명	백종주	백재택	백두환
-----	-----	-----	-----

중2. 대전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2,855,980		2,857,126		-1,146		-0.0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6,472	0.2	교육활동 지원	18,425	221,691	7.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01	269,943	9.5	기본적 교육활동	-92	249,777	8.8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105	2,370,635	83.0	선택적 교육활동	1,171	69,009	2.4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6,708	0.2	인적자원 운용	-4,903	1,498,394	52.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70	175,912	6.2	학교 일반운영	-26,515	168,010	5.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72	26,310	0.9	학교 재무활동	0	10	0.0
					학교시설 확충	0	22,972	0.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768	626,117	21.9

중3. 서해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1,332,307		1,339,302		-6,995		-0.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1,523	0.9	교육활동 지원	-500	31,036	2.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5,000	1.1	기본적 교육활동	-6,086	152,373	11.4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5,310	1,177,619	88.4	선택적 교육활동	0	20,028	1.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625	124,425	9.3	인적자원 운용	-7,231	744,769	55.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940	3,740	0.3	학교 일반운영	-6,215	74,219	5.6
					학교 재무활동	0	606	0.1
					학교시설 확충	13,000	81,896	6.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7	227,380	17.1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중4. 영남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2,183,155		2,229,113		-45,958		-2.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31,823	93,710	4.2	인적자원 운용	-5,571	1,162,043	53.2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780	1,624,373	74.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2,705	518,876	23.7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671	83,116	3.8	기본적 교육활동	-4,115	89,177	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7,483	358,589	16.4	선택적 교육활동	-1,552	215,308	9.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799	4,273	0.1	교육활동 지원	-5,705	115,903	5.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9,094	0.8	학교 일반운영	21,490	79,648	3.6
					학교 재무활동	-7,800	2,200	0.1

중5. 원주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3,514,121		3,485,097		29,024		0.9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9,727	0.3	교육활동 지원	21,572	168,904	4.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288	12,408	0.4	기본적 교육활동	-36,002	440,929	12.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2,397	3,313,949	94.3	선택적 교육활동	8,809	104,134	3.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4,641	172,731	4.9	인적자원 운용	-18,391	2,125,271	60.5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556	5,306	0.2	학교 일반운영	375	151,610	4.3
					학교 재무활동	0	11,202	0.3
					학교시설 확충	0	226,193	6.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2,661	285,878	8.1

간서명	백종규	백근택	백두한
-----	-----	-----	-----

중6. 한국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4,561,585		4,556,108		5,477		0.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116,150	2.5	인적자원 운용	-6,083	2,790,595	61.1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0,548	3,927,375	8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6,540	471,657	10.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79,055	3.9	기본적 교육활동	4,574	121,042	2.6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5,129	288,201	6.3	선택적 교육활동	-8,473	277,487	6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8	7,477	0.1	교육활동 지원	6,137	169,608	3.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43,327	0.9	학교 일반운영	1,225	215,754	4.7
					학교시설 확충	1,557	502,442	11
					학교 재무활동	0	13,000	0.2

중7. 호남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5회	3,512,081		3,532,191		-20,110		-0.6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1,000	0	0	인적자원 운용	-3,222	1,811,846	51.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7,748	302,132	8.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102	442,346	12.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75	15,688	0.4	기본적 교육활동	-5,992	398,942	11.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2,452	3,111,065	88.5	선택적 교육활동	-143	67,064	1.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015	8,375	0.2	교육활동 지원	-116	172,424	4.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74,821	2.1	학교 일반운영	-12,074	244,071	6.9
					학교시설 확충	8,539	375,388	10.6
					학교 재무활동	-2,000	0	0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고1. 동해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6회	3,096,276		3,141,983		-45,707		-1.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	0	9,700	0.3	인적자원 운용	-14,030	1,433,236	46.2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51,270	1.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6,973	658,763	21.2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54,767	2,627,787	84.8	기본적 교육활동	-13,913	175,333	5.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9,723	292,505	9.4	선택적 교육활동	-5,908	41,718	1.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836	88,629	2.8	교육활동 지원	-41,250	601,941	19.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73	3,672	0.1	학교 일반운영	-4,196	111,955	3.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2,713	0.7	학교시설 확충	6,617	40,802	1.3
					학교 재무활동	0	32,528	1

고2. 서울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5회	9,967,150		8,714,628		1,252,522		14.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2,764	0.3	교육활동 지원	1,269,717	2,214,288	22.2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269,498	1,754,714	17.6	기본적 교육활동	0	92,576	0.9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725	6,923,626	69.5	선택적 교육활동	-761	20,026	0.2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24,031	874,389	8.8	인적자원 운용	-11,358	4,306,446	43.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98	359,453	3.6	학교 일반운영	18,745	537,586	5.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828	22,204	0.2	학교 재무활동	0	0	0.0
					학교시설 확충	-27,957	2,041,962	20.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136	754,266	7.6

간서명	백종주	백재택	백우환
-----	-----	-----	-----

고3. 서해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3,993,776		3,936,029		57,747		1.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8,446	0.5	교육활동 지원	-50,402	566,046	14.2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4,966	362,871	9.1	기본적 교육활동	99	41,899	1.0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61,640	3,205,514	80.3	선택적 교육활동	0	20,348	0.5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11,005	137,947	3.5	인적자원 운용	109,122	2,204,643	55.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607	259,259	6.5	학교 일반운영	692	114,441	2.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39	9,739	0.3	학교 재무활동	0	515	0.0
					학교시설 확충	1,254	116,285	2.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018	929,599	23.3

고4. 영남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4,152,735		4,185,642		-32,907		-0.8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6,742	45,740	1.1	인적자원 운용	-21,161	1,289,580	31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4,064	3,239,339	7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36	967,750	23.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665	338,959	8.1	기본적 교육활동	-2,903	44,828	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6,148	398,549	9.5	선택적 교육활동	-2,535	94,195	2.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288	36,494	0.8	교육활동 지원	-6,405	163,166	3.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93,654	2.2	학교 일반운영	3,317	308,453	7.4
					학교시설 확충	0	996,377	23.9
					학교 재무활동	-4,756	288,386	6.9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	-----	-----	-----

고5. 원주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4,466,102		4,316,930		149,172		3.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7,640	0.1	인적자원 운용	107,298	2,523,306	56.4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72,346	3,673,850	82.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938	784,649	17.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0,282	188,714	4.2	기본적 교육활동	-8,274	347,268	7.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073	533,007	11.9	선택적 교육활동	-7,541	20,513	0.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4,035	18,120	0.4	교육활동 지원	55,217	233,800	5.2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44,771	1	학교 일반운영	-26,266	246,939	5.5
					학교시설 확충	23,800	303,803	6.8
					학교 재무활동	0	5,824	0.1

고6. 한국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7,942,496		7,701,139		241,357		3.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0	60,000	0.7	인적자원 운용	1,332	3,535,871	44.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36,257	6,196,665	7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3,780	1,851,041	23.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65,769	291,874	3.6	기본적 교육활동	5,918	185,077	2.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5,377	1,309,054	16.4	선택적 교육활동	-14,989	57,235	0.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6,246	33,171	0.4	교육활동 지원	99,851	550,352	6.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51,732	0.6	학교 일반운영	11,490	394,245	4.9
					학교시설 확충	-16,000	1,357,895	17
					학교 재무활동	-25	10,780	0.1

간서명	백종규	백지태	백두환
-----	-----	-----	-----

고7. 호남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5회	3,646,603		3,628,918		17,685		0.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405	4,120	0.1	인적자원 운용	-3,366	2,173,650	59.6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24,715	3,086,874	84.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3,322	875,623	24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111	305,058	8.3	기본적 교육활동	-3,534	60,692	1.6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397	226,374	6.2	선택적 교육활동	1,266	16,266	0.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17	7,777	0.2	교육활동 지원	5,399	132,585	3.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6,400	0.4	학교 일반운영	-2,188	224,458	6.1
					학교시설 확충	3,214	163,329	4.4
					학교 재무활동	0	0	0

법인일반회계

[단위 : 천원]

수 입 의 부				지 출 의 부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전입및기부수입	10,862,745	8,362,742	2,500,003	인 건 비	236,949	235,632	1,317
교육외수입	207,746	207,745	1	관리운영비	454,467	386,504	67,963
투자외기타자산수입	80,000	80,000	0	연구학생경비	0	0	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교육외비용	8,300	11,000	-2,700
고정부채입금	0	0	0	전 출 금	3,633,378	3,633,377	1
미사용전기이월	546,011	546,011	0	예 비 비	10,000	10,000	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4,528,411	4,528,411	0
				고정자산매입지출	0	0	0
				고정부채상환	0	0	0
				미사용차기이월	2,824,997	391,574	2,433,423
합 계	11,696,502	9,196,498	2,500,004	합 계	11,696,502	9,196,498	2,500,004

간서명	백종규	백지태	백두환
-----	-----	-----	-----

별지3. 2020년도 결산안

휘경데이케어센터

[단위 : 원]

수 입 의 부				지 출 의 부			
관 별	예산액	결산액	증 감	관 별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입소자부담금수입	86,000,000	73,203,280	12,796,720	사무비	546,543,600	411,684,637	134,858,963
보조금수입	76,600,000	76,150,000	450,000	재산조성비	180,000,000	30,834,970	149,165,030
후원금수입	7,000,000	8,330,000	-1,330,000	사업비	119,800,000	54,313,430	65,486,570
요양급여수입	438,000,000	389,494,370	48,505,630	잡지출	5,416,400	106,333	5,310,067
이월금	234,000,202	234,000,202	0	예비비 및 기타	10,000,000	0	10,000,000
잡수입	22,159,798	9,717,926	12,441,872	적립금 및 준비금	2,000,000	1,000,000	1,000,000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13,240,000	12,223,836	1,016,164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13,240,000	0	13,240,000
합 계	877,000,000	803,119,614	73,880,386	합 계	877,000,000	497,939,370	379,060,630

간서명	백종규	백영태	백우현
-----	-----	-----	-----

별지4. 보수규정안

2021년도 삼육대학교 보수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모든 정규 교직원에 적용한다.
2. 본 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교직원 직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직급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별표에 따른다.
3. “승급”이라 함은 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수)

1. 교직원에게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 및 조정하여 보수로 지급한다.
2. 교직원에 대한 월 보수액은 매년도 보수 총량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사회 결의를 하여 정한다.

제5조(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일)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1. 보수 지급방법
보수 지급은 규정상의 보수 계산방법에 따라 월 보수로 지급한다.
2. 보수 지급일
보수는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제6조(보수 계산방법) 교직원의 신분 또는 보수 등의 변동이 있을 때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채용의 첫 달 보수는 출근 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단, 수당은 지급 제한할 수 있다.
2. 승급, 감봉 또는 보수기준 산정의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
3. 퇴직, 사망할 시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면직을 당한 자에 대한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의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학원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휴직 및 직위해제와 징계 중인 교직원의 보수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의 보수산정) 교직원 보수는 본교에 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되, 본봉은 [별표1-1], [별표1-2]에 따르며 총장은 특1호봉을 적용한다.

제9조(보수의 조정)승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조정한다.

제10조(승급) 교직원의 승급은 해당 인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되, 신규 채용 후 최초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제대	백두원
-----	-----	-----	-----

제11조(승급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급시킬 수 없다.

1. 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40일 이상의 결근 또는 병가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자.
2.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4.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승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규정은 승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2조(승급의 기간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산정 기간으로 인정한다.

1. 연구출장기간. 단, 승급의 시기는 연구출장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그 직위해제 기간. 단, 업무상 이유에 의한 경우만 포함한다.

제13조(특별승급)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제14조(성과상여수당)

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2) 면직·휴직·정직 되어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단, 지급할 경우라도 일할계산한다
3.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관리업무수당) 교직원으로서 총장에 의해 관리업무를 부여 받은 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3-1]에 의거 지급한다.

제16조(정근수당)

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 일에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1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7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위 항의 근속연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교직원의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및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2]을 따른다.

제17조(장기근속수당)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4-3]을 따른다.

제18조(명절휴가비)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4-4]에 의거 지급한다.

제19조(가족수당)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4-1]을 따른다.

제20조(자녀학비보조수당)

1.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본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교직원에게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	-----	-----	-----

조수당을 지급한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4]에 의거 지급한다.

제21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4-4]에 의거 지급한다.

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휴일·당직수당 포함)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퇴직금)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일로부터의 근무연한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2. 교직원이 본 대학교 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24조(명예퇴직수당) 교직원이 관련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5조(조교의 보수) 본 대학교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로서 보수는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6조(수습교직원의 보수) 본 대학교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해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을 전제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동안 보수 및 근무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7조 (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의 대상과 비율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얻어 따로 정한다.

제28조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보수의 조정 및 특별상여금 운영에 관한 심의와 논의를 위해 교직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9조 (평가) 교직원의 임금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평가 기준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제30조 (이의절차)

1. 교직원은 본인에게 책정된 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임금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1)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구 규정에 의해 지급받던 기본급과 복리후생을 제외한 제수당(연구보조비, 교육지원비, 학사지도비, 특수업무수당)은 합계 금액에 변동없이 성과상여수당으로 통합한다. 단,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별도로 유지한다.

3) 구 규정 제수당 지급금액 중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는 관리업무수당으로 통합하되,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 시행은 대학교 전체 정규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3. 이 규정 시행 전 관련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우환
-----	-----	-----	-----

[별표 1-1]

교원 본봉표

(단위: 원)

호봉	본 봉	비 고	호봉	본 봉	비 고
1	1,988,700		25	4,502,900	
2	2,051,300		26	4,659,100	
3	2,114,300		27	4,815,300	
4	2,176,900		28	4,971,500	
5	2,240,000		29	5,090,300	
6	2,309,000		30	5,209,400	
7	2,377,900		31	5,328,100	
8	2,447,000		32	5,446,900	
9	2,550,800		33	5,565,900	
10	2,654,600		34	5,635,100	
11	2,758,600		35	5,704,300	
12	2,862,000		36	5,773,500	
13	2,965,100		37	5,842,700	
14	3,068,500		38	5,911,900	
15	3,189,700		39	5,981,100	
16	3,310,700		40	6,050,300	
17	3,431,100		41	6,119,500	
18	3,551,500		42	6,188,700	
19	3,672,700		43	6,257,900	
20	3,792,700				
21	3,912,900		특1	8,009,400	
22	4,033,200				
23	4,190,100				
24	4,346,500				

간서명	박종규	박영태	박두환
-----	-----	-----	-----

[별표 1-2]

직원(기능직 포함) 본봉표

(월지금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간서명

백종규

백영태

백우환

[별표 2-1]

연구보조비(교원)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교 수	690,000	
부교수	620,000	
조교수	560,000	

[별표 2-2]

교육지원비(직원)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2급	690,000		
3급	620,000		
4급	560,000		
5급	430,000		
6급	360,000	270,000	
7급	320,000	240,000	
8급	290,000	220,000	
9급	250,000	190,000	

[별표 2-3]

학사지도비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교 원 직 원	30,000	교원 및 일반직

[별표 2-4]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갑종	50,000	법정선임자
을종	40,000	

간서명	백 종 규	백 정 태	백 두 환
-----	-------	-------	-------

[별표 3-1]

관리 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교원		직원	
관리업무	금액	관리업무	금액
1)부총장	600,000	1)처장, 재무실장	400,000
2)처장	400,000	2)부처장	300,000
3)대학원장, 학술정보원장, 평생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전원인성교육원장, 입학본부장, 학교기업대표, 부속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300,000	3)내부감사	240,000
4)단과대학장, 학부장, 부학장, 박물관장, 생활교육관장, 사회봉사단장, 부분부장, 학과장	170,000	4)4급팀장	240,000
5)센터장, 주임교수, 부원장, 부관장, 부단장	120,000	4급부장	120,000
*학과장은 활동수당 13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5)5급팀장	220,000
*학교기업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한다.		5급	100,000
		6)6급팀장	310,000
		6급(4년이상)	230,000
		6급(4년미만)	190,000
		7)7급	165,000
		8)8급	120,000
		9)9급	110,000

*총장의 관리업무수당은 직급보조비만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관리업무수당은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통합한 것임.

[별표 4-1]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배우자	40,000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4인까지 지급한다.(단 부부가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별표 4-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근속연수	지급률	비고
10년 이상	본봉의 50%	지급시기: 1월, 7월
10년 미만	본봉의 45%	
9년 미만	본봉의 40%	
8년 미만	본봉의 35%	
7년 미만	본봉의 30%	
6년 미만	본봉의 25%	
5년 미만	본봉의 20%	
4년 미만	본봉의 15%	
3년 미만	본봉의 10%	
2년 미만	본봉의 5%	
1년 미만	본봉의 0%	

간서명	백종주	백정택	백두한
-----	-----	-----	-----

[별표 4-3]

근속수당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근속연수	금 액	비 고
25년 이상	130,000	
20년 이상-25년 미만	110,000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	
5년 미만	교원보전수당 20,000	

[별표 4-4]

기타지원비 지급 구분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급양비	140,000	-교통보조비: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처/실장 -명절휴가비는 사업실적에 따라 5%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교통보조비	200,000	
명절휴가비	봉급의 40%(2월, 9월)	
학비보조수당	등록금 전액(한도는 공무원보수규정)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우환
-----	-----	-----	-----

2021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따라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대학’ 이하 함)에 재직하는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과 대학 인사규정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대학 규정 및 연봉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③ 겸임교원, 강사,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은 대학 규정 및 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④ 201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⑤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월액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연봉제 교직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봉급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① 교직원의 보수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교직원이 휴직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 및 대학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③ 결근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교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보수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⑤ 면직, 징계,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 대학규정 및 결의(이사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⑥ 대학 규정에 따라 연구년 또는 산업체 직무연수 등을 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수환
-----	-----	-----	-----

제6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교직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보수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를 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2장 봉급

제7조(호봉확정 및 승급) ①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호봉 및 승급 등은 대학 규정에 의한다.

②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직원의 호봉은 승급월로 승급한다.

제8조(교직원의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① 교직원에 대한 봉급표는 [별표1]의 보수총량제 운영방안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총장 및 교원의 봉급월액은 [별표2]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교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으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3]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수당

제9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수주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침 및 대학 규정에 따라 강의료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월 1일에 재직 중이고 봉급이 지급되면서 직전 6개월간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하되, 휴직/징계(감봉이상) 중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하여 지급한다(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별표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별표6]의 지급구분에 따른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간서명	백종규	백태현	백우한
-----	-----	-----	-----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단,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2.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족 중 한명이 [별표6]의 1)에 표기된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직계존속과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5.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매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상여금 등) ① 근무성적, 업무실적, 업적평가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게는 대학규정 및 [별표1]의 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 부속기관은 별도의 대학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의 부속기관은 평생교육원, 사이버지식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 산학협력단 등으로 한다.

③ 장기근속자에게는 [별표7]에 따른 장기근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자에게는 [별표8]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은 대학규정에 따른다.

⑥ 정기상여금을 아래와 같이 연2회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날로 한다.

2. 위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 또는 징계중이거나 평가기준 미달인 교직원과 입사 후 6개월 미만 교직원은 제외한다(단, 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이동한 직원은 직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3. 정기상여금은 [별표1]의 1)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월봉급액의 40% ~ 6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일로부터 전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수당) ① 교직원에게 [별표9]에 따른 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직을 맡은 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 따른 직책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 규정에 따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1급 이하의 직원에게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보상비(5일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단,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에게 대학 규정에 따른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대학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규정에 따라 사택에 거주하는 교직원이나 전세금 보조를 받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월봉급액의 3.5%를 사택비로 징수한다.

② 이사비는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우환
-----	-----	-----	-----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별표1] 보수총량제 운영방안

1) 봉급표 운영방안

내역	인하율			동결	인상률		
기준	수입대비 / 인건비율			수익이월금+적립금(순수 교비)			
	72% 이상	71%	70%	0 ~ 4억 미만	4억 이상 ~ 8억 미만	8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인하 및 인상%	월봉급표 3%	월봉급표 2%	월봉급표 1%	동결	공무원 인상률	공무원 인상률 1.2	공무원 인상률 1.5
정기상여금	40%			50%	60%		

①수입(등록금 및 수강료, 혁신지원사업 수입금액)

②인건비(자금계산서의 교원보수 및 직원보수 총 금액)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기준(수익이월금 및 적립금)	5억 이상	7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성과상여금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별표2] 교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88,600	18	3,729,900	근1	5,918,000
2	2,154,300	19	3,857,200	근2	5,990,700
3	2,220,500	20	3,983,100	근3	6,063,400
4	2,286,200	21	4,109,400	근4	6,136,100
5	2,352,400	22	4,235,800	근5	6,208,800
6	2,424,900	23	4,400,400	근6	6,281,500
7	2,497,200	24	4,564,700	근7	6,354,200
8	2,569,900	25	4,729,000	근8	6,426,900
9	2,678,900	26	4,893,000	근9	6,499,600
10	2,787,900	27	5,057,100	근10	6,572,300
11	2,897,100	28	5,221,100	특3	7,011,200
12	3,005,700	29	5,345,900		
13	3,114,000	30	5,470,900		
14	3,222,500	31	5,595,700		
15	3,349,800	32	5,720,400		
16	3,476,900	33	5,845,300		
17	3,603,400				

간서명	백종규	백정태	백우환
-----	-----	-----	-----

[별표3] 직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081,400	3,674,300	3,314,900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2	4,224,500	3,810,600	3,437,600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3	4,371,200	3,948,700	3,563,900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4	4,521,200	4,088,200	3,691,100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5	4,674,800	4,229,500	3,820,400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6	4,830,300	4,371,100	3,951,000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7	4,988,100	4,514,500	4,083,000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8	5,147,300	4,657,800	4,215,500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9	5,308,700	4,802,000	4,349,100	3,817,100	3,444,600	2,937,700	2,653,400	2,384,600	2,153,500
10	5,470,900	4,946,100	4,482,60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11	5,633,000	5,091,000	4,616,200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12	5,800,400	5,240,700	4,754,800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13	5,968,800	5,391,400	4,883,600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14	6,137,600	5,527,700	5,003,200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15	6,285,100	5,653,600	5,113,300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16	6,416,100	5,768,800	5,216,100	4,594,000	4,160,9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17	6,532,300	5,874,900	5,311,600	4,679,900	4,241,2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18	6,635,800	5,971,800	5,400,300	4,759,900	4,317,0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19	6,728,400	6,061,500	5,482,400	4,834,800	4,388,4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20	6,811,500	6,143,200	5,559,300	4,904,700	4,455,3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21	6,888,000	6,217,900	5,630,400	4,970,100	4,518,3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22	6,956,100	6,286,500	5,696,400	5,031,400	4,577,4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23	7,013,700	6,349,200	5,757,200	5,088,900	4,633,3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24		6,400,500	5,814,000	5,143,100	4,685,4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25		6,449,500	5,860,700	5,192,700	4,734,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26			5,905,200	5,234,700	4,781,3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7			5,946,500	5,273,500	4,819,8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8				5,310,500	4,856,8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9					4,890,8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30					4,923,9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별표4] 정근수당 지급구분

(지급률 : 월봉급액 기준 %)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3년 이상	15%	6년 인상	30%	9년 이상	45%
1년 이상	5%	4년 이상	20%	7년 이상	35%	10년 이상	50%
2년 이상	10%	5년 이상	25%	8년 이상	40%		

간서명	박종규	박영택	박두환
-----	-----	-----	-----

[별표5]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

(월지급액, 단위 : 원)

근무연수	금액	근무연수	금액
5년 미만	20,0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10,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	25년 이상	130,000

[별표6] 가족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인당)	비고
배우자	40,000	
직계존속	20,000	남 : 60세 이상 / 여 : 55세 이상
자녀	첫째 : 20,000 / 둘째 : 60,000 / 셋째이후 : 100,000	20세 미만

1)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기관

- 교단 내 모든 기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 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립학교 등

[별표7] 장기근속포상금

(단위 : 원)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속자	20년 이상 근속자	30년 이상 근속자
지급금액	200,000	300,000	500,000

[별표8] 전별금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임원(총장, 처장, 실장)	600,000	1. 정년은퇴(명예퇴직)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기의 금액 범위 안에서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수, 과장급 이상	500,000	
기타	400,000	

[별표9] 직책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연번	금액	지급대상
1	250,000	총장
2	200,000	처장
3	170,000	부처장겸 본부장, 재무실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지원실장, 전인교육원장
4	140,000	행정부장, 도서관장, 본부장, 학부장
5	120,000	학과장
6	100,000	행정과장, 전임주임 전공주임, 센터장
7	80,000	팀장
8	60,000	계장
9	40,000	주임

간서명	백종규	백태	백두원
-----	-----	----	-----

[별표10] 기타수당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지급기준 등)
직급보조비	6급 130,000 8급 120,000 7급 125,000 9급 110,000	대상 :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학사지도비	30,000	대상 : 교원, 일반직, 기술직
정액급식비	140,000	대상 : 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교원연구보조비	교 수 690,000 조교수 560,000 부교수 620,000	대상 : 교원
관리업무수당	총장 100,000 처, 실장, 평생교육원장 50,000	
활동수당	학부장 및 학과장 50,000	
직원교육지원비	2급 690,000 6급 360,000 3급 620,000 7급 320,000 4급 560,000 8급 290,000 5급 430,000 9급 250,000	대상 : 일반직, 기술직
	6급 270,000 8급 220,000 7급 240,000 9급 190,000	대상 : 기능직

간서명	백종규	백태영	백우환
-----	-----	-----	-----

별지5. 법인정관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④ (생략)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u>연령</u>,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u>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u>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②~④ (현행과 같음)	제24조 제1항 개정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1.~2. (생략)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1.~2. (현행과 같음) 3. <u>특수관계자(친인척 등)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u>	제33조 3호 신설
제110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4인 나. 직원 2인 다. 학생 2인 라. 동문 1인 마.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인	제110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u>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 11명으로</u>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4 <u>5</u>인 나. 직원 2 <u>3</u>인 <u>다. 조교 1인</u> 다. <u>라</u>. 학생 2인 라. <u>마</u>. 동문 1인 마. <u>바</u>.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u>2</u> <u>1</u>인	제110조 제1항 개정 제110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113조 (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3조 (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u>1</u> <u>2</u>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3조 제1항 개정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우환
-----	-----	-----	-----

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안)

1964.9.8	제정	2005.3.1	개정
1981.3.1	개정	2006.3.1	개정
1984.3.1	개정	2007.3.1	개정
1985.3.1	개정	2008.3.1	개정
1988.3.1	개정	2009.3.1	개정
1990.3.1	개정	2010.3.1	개정
1991.3.1	개정	2011.3.1	개정
1993.3.1	개정	2012.3.1	개정
1995.3.1	개정	2013.3.1	개정
1996.1.17	개정	2014.3.1	개정
1997.3.1	개정	2015.3.1	개정
1998.3.1	개정	2016.3.1	개정
1999.3.1	개정	2016.9.1	개정
2000.3.1	개정	2017.2.27	개정
2001.3.1	개정	2018.3.1	개정
2003.3.1	개정	2020.3.1	개정
2004.3.1	개정	2021.1.22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과 목표)

-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두환
-----	-----	-----	-----

제3조 (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 ②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 ③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 ④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

제4조 (총장)

-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조직의 구성

제5조(조직 구성)

-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간서명	백종규	백지태	백두환
-----	-----	-----	-----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행·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 (교육조직)

-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스미스학부대학을 둔다.
-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조직)

-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실을 둔다.
-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 ③ 각 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속시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태	백우환
-----	-----	-----	-----

- ① 부속시설로 국제교육원을 두며, 총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 ③ 각 부속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부속기구)

-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부설기관)

-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1항의 각 부설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산학협력단)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영태	백두환
-----	-----	-----	-----

제3장 학사와 학적

제1절 학사 운영

제13조 (학년도 및 학기)

-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업일)

-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 과정은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 전공교육을 위한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업방법과 교수시간)

- ① 수업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최소교수시간(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18조 (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 (편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영태	백두환
-----	-----	-----	-----

제21조 (입학 및 편입학 전형)

- ① 입학 및 편입학생의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 ②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 ③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등록 및 편·입학의 취소)

-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재입학)

-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

간서명	백종주	백지태	백두환
-----	-----	-----	-----

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전과)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등록금

제25조 (등록금 납부)

-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등록금의 공시)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을 공시한다.

제27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등록금 외 교육비)

실험·실습·실기 및 특별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타 교육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0조 (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절 학적관리

제31조 (휴학 및 복학)

-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민태	백우환
-----	-----	-----	-----

-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되며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32조 (유급)

-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 ②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유급된 학생은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3조 (학사경고)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미흡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조치를 하며, 그에 관한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이중학적 금지)

간서명	백종규	백지택	백두한
-----	-----	-----	-----

학사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이중학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허용하거나 총장이 허락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5조 (퇴학 및 제적)

-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칙에 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제5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제36조 (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전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이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 ③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등에 교직 과목을 둔다.
- ⑤ 교과목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실험·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8조 (휴, 보강)

간서명	백종규	백영태	백우환
-----	-----	-----	-----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학점인정)

-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④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한다.
- ⑤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 인정과정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2조 (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6~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	-----	-----	-----

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전공이수)

-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제45조 (학·석사 연계과정)

-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간서명	백종주	백지택	백두환
-----	-----	-----	-----

④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 (인증제 교육과정)

학과(부)는 일반교육과정과 국내외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 학생 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48조 (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은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 (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절 시험과 성적

제50조 (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와 및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 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52조 (성적 평가)

-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절 수료와 졸업

제53조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제54조 (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5조 (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 (졸업)

-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5년제 건축학과는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태	백두환
-----	-----	-----	-----

-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5년제 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57조 (학생회)

- ① 본교 학생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 (학생회비)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제59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 (학생활동)

- ① 본교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및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 (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62조 (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간서명	백종규	백지택	백두환
-----	-----	-----	-----

제2절 장학금

제63조 (장학금 지급대상)

- ①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 (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균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포상 및 징계

제65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66조 (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 (징계자의 재입학) 학교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5장 공개강좌

제68조 (공개강좌)

-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회의체

제1절 교수회와 평의원회

제69조 (교수회 종류와 의장)

간서명	백종규	백민택	백두환
-----	-----	-----	-----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의장은 아래와 같다.

1. 전체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이 의장이 된다.
3. 학과(학부)교수회는 해당 학과(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학부장)이 의장이 된다.
4. 대학원교수회는 해당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70조 (전체교수회)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과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학생 포상, 장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 학사관련 사항
-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1조 (대학과 학과(학부), 대학원의 교수회)

- ①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교수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교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 (대학평의위원회)

-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

간서명	백종규	백지태	백우환
-----	-----	-----	-----

제73조 (교무위원회)

-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4조 (행·재정위원회)

-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한
-----	-----	-----	-----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5조 (직원회)

- ① 직원의 행정·복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회를 둔다.
- ② 직원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6조 (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 ① 교무위원회와 행·재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학칙의 개정

제77조 (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8조 (절차의 생략)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

간서명	박종규	박재택	박두한
-----	-----	-----	-----

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부 칙

- ①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1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통합되어 신설된 학과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통합된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3학년도(2024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의 휴학자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항공관광외국어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지능정보융합학부’로 통합된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3학년도(2024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의 휴학자는 ‘지능정보융합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능정보융합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별표1]

「학부(과) 편성 및 입학 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2021	2020	2019	2018	2017
신학대학	신학과		40	40	35	35	35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80	80	90	90	90
		영어통번역전공					
	중국어학과		—	30	34	34	34
	일본어학과		—	30	34	34	34
	경영학과		62	62	57	57	57
	경영정보학과		—	40	40	40	40
	유아교육과		50	50	50	50	50
	자유전공학부		—	—	—	—	36
	글로벌한국학과		30	20			
보건지대학	항공관광외국어학부	동양어문화전공	40	—	—	—	—
		항공관광전공					
	사회복지학과		30	30	28	28	28
	보건관리학과		30	30	30	30	30
	상담심리학과		40	40	39	39	39
	식품영양학과		46	46	46	46	46
	생활체육학과		40	40	45	45	45
과학기술대학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	111	111	111
		소프트웨어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화학생명과학과		73	73	73	73	73
	동물생명자원학과		40	60	60	60	60
	환경디자인원예학과		75	75	75	75	75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시스템전공	71	71	—	—	—
		소프트웨어전공					
	IT융합공학과		—	40	—	—	—
	지능정보융합학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100	—	—	—	—
		지능정보공학전공					
		지능형시스템공학전공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5년제)		40	40	36	36	36
	건축학과 (4년제)		10	—	—	—	—
	아트엔디자인학과		70	70	84	84	84
	음악학과		50	50	50	50	50
간호대학	간호학과		65	65	65	65	65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		(40)	(40)	(40)	(40)	(40)
약학대학	약학과		(30)	(30)	(30)	(30)	(30)
계			1,122(70)	1,122(70)	1,122(70)	1,122(70)	1,158(70)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별표2]

「학위명」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영어통번역전공	문학사	동양어문화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항공관광전공	관광경영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경영공학사	지능형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지능정보공학전공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건축학과 (4년제)	공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연계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연계전공	중독심리전공	문학사	스마트헬스케어전공	이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문학사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연예술콘텐츠전공	문학사	외식산업경영전공	이학사
	유아건강교육전공	문학사	운동재활전공	이학사
	데이터과학전공	경영학사	중독재활전공	보건학사
	마케팅사회조사경영	경영학사	건강운동관리전공	체육학사
	사회적경제전공	경영학사		

융합(공유)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융합(공유)전공	바이오그린디자인	이학사	스포츠의학전공	체육학사

간서명	백종규	백정택	백두환
-----	-----	-----	-----

제○○○○호
학 위 증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학과, ○○학사 ○○○학과, ○○학사 ○○○학과, ○○학사 부 전 공: ○○○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학위등록번호: 삼육대 ○○○○(학)○
○○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제○○○○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한
○○학(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
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 ○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삼육대- 학점-○○○○-학-○○○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

2021 법인재정운영 중장기 계획

법인사무처 재무팀

I 목적

- ☐ 삼육교육의 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교단에 기여함.
- ☐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삼육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 출연금의 운영계획으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로 모범적이며 선도적인 법인 운영 모델 제시
-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운영 능력 향상

II 근거

- ☐ 법인정관 제36조에 의한 설치학교의 법정부담금의 부담률 확대
- ☐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한 사업역량 확대로 법인출연 및 지원금 확대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및 제48조의 2 확보를 위한 재정 효율성 향상

III 방침

- ☐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고유목적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로 학교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수립
- ☐ 법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므로 재정의 확보 및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됨으로 삼육교육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킴
- ☐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른 삼육대학교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부담금,

간서명	박종규	박재택	박두환
-----	-----	-----	-----

퇴직수당)을 포함한 법인 부담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임대사업부의 사업 활성화를 모색함으로 재정의 확보 창출

□ 수익용기본재산(예금)의 투자 모델을 연구하여 안정적 투자 수익 창출로 학교지원

IV 재정운영계획의 기본 방향

□ 재정확보계획

- 임대사업의 활성화 및 삼육식품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사업 전입금 확보

- 기부금 수입(합회 및 유지재단) 증대를 통한 기부금 수입 확보

<표 1> 재정운용 계획 재정확보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재정운영 계획	세부계획					
수익사업 전문화	“삼육식품” 수익 증대 방안을 통한 교육사업 지원 재원 확보 - 삼육식품 실적향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증가 예상 - 삼육식품 2018년 1,000만불 수출탑 달성 - 삼육수산 2019년 300만불 수출탑 달성 - 베트남 ‘K-Foorand 브랜드 대상’ 달성 - 삼육두유에 이어 “삼육광천김” 종목 런칭을 통해 수익사업 확대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6,500	6,600	6,700	6,800	7,000
수익용 기본재산 확대	3기신도시 왕숙지구에 속한 임송 부지 처분대금을 이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운영 - 동문 부지 및 건물(교육용) 매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계획 - 원룸 신축 후 임대사업 운영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500	500	500	500	500
법인 기금 모금 (유지재단)	- 대학 발전기금 캠페인 “글로벌 삼육” 과 더불어 법인 기금 모금 추진 - 유지재단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인 기금 모금 추진 - 설치 경영하는 28개의 학교(초중고대학)의 법정부담금 및 재정결합 보조금으로 전액 사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1,554	1,589	1,624	1,658	1,691

간서명	백종규	백영택	백두환
-----	-----	-----	-----

□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집행

- 삼육대학교 및 삼육보건대학교의 교직원 사학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건강보험부담금 등 전출금을 당초 예산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의무지출로 구분하고 차액만큼을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법인운용비 사용하도록 계획

<표 2>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 고
수 입 항 목	전입금 및 기부수입	8,054	8,189	8,324	8,458	8,691	
	교육외수입	500	500	500	500	5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89	549	572	612	677	
자금수입총계		9,043	9,238	9,396	9,570	9,868	
지 출 항 목	인건비	219	225	232	239	247	
	관리운용비	340	346	350	353	357	
	교육외비용	20	20	20	20	20	
	전 출 금	삼육대학교	3,027	3,166	3,306	3,459	3,693
		삼육보건대학교	570	620	650	690	720
		초중고	704	704	704	704	704
		경상비	851	861	869	874	879
		합계	5,152	5,351	5,529	5,727	5,99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2,763	2,724	2,653	2,554	2,527
	고정부채상환		-	-	-	-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49	572	612	677	721
	자금지출총계		9,043	9,238	9,396	9,570	9,868

간서명	박종규	박민태	박두현
-----	-----	-----	-----

별지8.

삼육보건대학교 2025 ACE36+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안)

2025 삼육보건대학교 ACE36+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발전계획 목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 ACE 36 진심대학 SHU!

교육혁신 목표 ACE+ 4CUS*(FOCUS) 교육체제 구축

*4CUS 14가지 C로 시작되는 SHU의 미래교육혁신방안을 의미함
(Convergence Technology, 24hour Counseling by Chatbot, Computing Thinking, Continuing Education)

Metaverse SHU for You

보건의료 AI특성화 선도 대학	학생중심 원격평생교육 선도 대학	국제교류 혁신 선도 대학
맞춤교육 AI 디지털 콘텐츠/VR콘텐츠 개발	맞춤교육 생애주기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과정 수출
AI특화 AI 보건의료 융합학과 신설	AI특화 ACE36 AI전인교육 맞춤형습체제 구축	특성화 HTHT AI기반 영어교과목 운영
거버넌스 공유대학 컨소시엄 구축	독창성 4차산업혁명 직업교육 모델 개발	인프라 G-Beauty 아카데미 운영
인프라 AI융합연구소 개설	인프라 사이버지식교육원 활성화	특별과정 외국인 노동자 직업교육 특별과정 개발

2021년 AI직업교육혁신센터 신설

- AI 관련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 AI 연계 학·창업교육 기획 및 운영

2020년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설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 원격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

2021년 메타버슈혁신센터 신설

- 글로벌 IT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메타버스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4대 혁신방향 +AI

교육 혁신
행정 혁신
재정 혁신
신앙 혁신

Artificial Intelligence



메타버스 초입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 즉, 삼육보건대학교가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삼육재단 글로벌 네트워크
대칙 118개 / 병원 227개 / 교육기관 9371개

36 추진과제	과제번호	추진과제명	과제번호	추진과제명
	ST01	2030 ACE+ 4CUS 교육체제 구축지원사업	ST02	2036 100주년 기념사업
	ST03	Service Learning 활성화	ST04	MetaverSHU 대학혁신 사업
	ST05	지역사회 혁신 프로그램	ST06	신기술 융합학과 체제 개편
	ST07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ST08	진심인재상 체계 구축
	ST09	글로벌 삼육 프로젝트	ST10	평생직업교육과정 활성화
	ST11	원격교육 활성화	ST12	학생중심 행정 서비스
	ST13	교직원 참여 디사이플 프로젝트 운영	ST14	대학재정안정화 혁신체계 구축
	ST15	창업 창직 교육혁신	ST16	현장실습 교육혁신
	ST17	진심net 산학협력 체계 구축	ST18	건강한 대학 프로젝트
	ST19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ST20	교직원 역량강화
	ST21	데이터기반 대학성과관리 체계 구축	ST22	천명선교사 프로젝트
	ST23	AI 스마트 대학환경 구축	ST24	미디어 대학 홍보 혁신
	ST25	학생 100% 만족하고 행복한 대학	ST26	지역사회 발전 기여 선도 대학
	ST27	미래 유망산업 맞춤형 취업 지원	ST28	학생 주도 기획 프로젝트
	ST29	미래 핵심인재 양성 고숙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ST30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혁신
	ST31	생애단계를 고려한 생애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ST32	지역체 전인교육 강화
	ST33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체계 혁신	ST34	입학 자원 확대
	ST35	졸업생 능력향상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ST36	SHU culture change(SHUcc) project

간서명	백종규	백재택	백두환
-----	-----	-----	-----